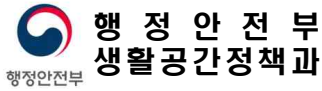


#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

2019. 4.



- 이 매뉴얼은 『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』 제4조의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설치·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책무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방법 등을 규정함
- 또한 시·도 및 시·군·구, 관련 공공기관 등의 소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함

## 목 차

I. 일반사항	1
II.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적용대상	2
1. 공중화장실의 정의	2
2. 적용대상	2
III. 점검체계	4
1. 체계도	4
2. 기관별 역할	4
3. 세부 추진 체계	5
IV. 점검절차	6
1. 점검계획 수립	6
2. 점검반 구성 및 운영	6
3. 점검대상 및 주기	7
4. 점검방법	7
5. 점검결과 조치	10
V. 민간소유 화장실 점검지원	11
VI. 홍보	12
참고1. 불법촬영 관련 규정	13
참고2. 주요기관 연락처	14

## I. 일반사항

### □ 목적

- 이 매뉴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점검주체인 시·도 및 시·군·구, 관련 공공기관의 임무·역할,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□ 적용 범위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상 공중화장실 정책 및 설치·관리 등과 관련된 시·도, 시·군·구\* 및 법인 또는 개인
  - \* 이 매뉴얼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·군·구에 포함하여 작성
  - ※ 또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,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이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(소규모 노래방, 음식점 등에 설치된 화장실)

### □ 관련 법규

- **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(행정안전부)**
  - (제4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
  - (제8조)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
- **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법무부)**
  - (제12조)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, 300만원 이하 벌금
  - (제14조) 불법촬영시 5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
## II.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적용대상

### □ 공중화장실의 정의(법제2조제1호)

-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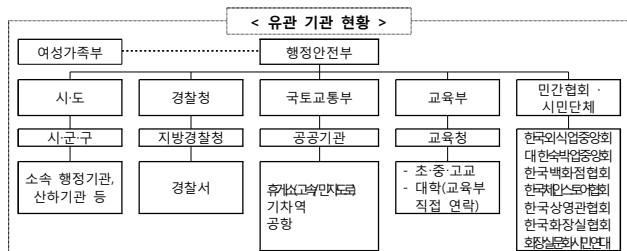
### □ 적용대상(법제3조, 영제3조)

-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  - \* 예) 북한산 국립공원, 남한산성 도립공원 등
-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에 따른 관광지·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, 시·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
  - \* 예)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  - \* 예) 고속버스터미널, 동서울터미널 등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·제5호·제7호·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·임시시장·상점가·전문상가단지
  - \* 예) 이마트, 홈플러스, 백화점 등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 - \* 예) 올림픽공원,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
-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  - \* 예) 고속도로 휴게소
-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시설
  - \* 예) 서울역, 대전역 등 기차역
-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사시설
  - \* 예) 경복궁역, 시청역 등 지하철역
-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
  - \* 예) 제주항 여객터미널,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
-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
  - \* 예) 유선장(오리배, 수상스키 영업장), 도선장(수상택시 도선장) 등
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
  - \* 예) 주유소
- 「액화석유가스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
  - \* 예) LPG 충전소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  - \* 예) 장충체육관, 잠실야구장 등
-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
  - \* 예) 인천공항, 김포공항 등
-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
  - \* 예) 세종문화회관, 예술의 전당 등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
  - 문화 및 집회시설 : 집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
  - 의료시설 : 병원, 격리병원
  - 교육연구시설 : 학교, 교육원, 연구소, 도서관
  - 노유자시설 : 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
  - 수련시설 : 생활권수련시설, 자연권수련시설
  - 묘지 관련 시설 : 화장시설, 봉안당,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
  - 장례시설 : 장례식장
-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
  - 2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, 근린시설, 업무+근린시설
  - 100제곱미터 이상의
    - 문화 및 집회시설 : 집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
    - 의료시설 : 병원, 격리병원
    - 교육연구시설 : 학교, 교육원, 연구소, 도서관
    - 노유자시설 : 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
    - 수련시설 : 생활권수련시설, 자연권수련시설

## III. 점검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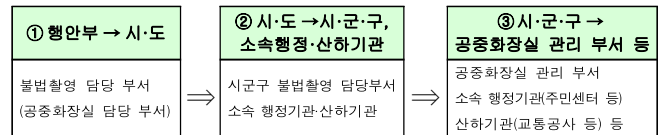
### □ 체계도



### □ 기관별 역할

기관	역할	비고
중앙부처	· (행안부) :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제도 총괄 · (여가부) :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총괄 · (경찰청) : 불법촬영 점검 협조 및 범죄 예방 총괄 · (국토부) : 주요 공공기관 업무연락 · (교육부) : 각급 학교 업무연락	
공공기관	· (구성) :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공항공사 등 · (역할) : 개별 시설(기차역 등) 공중화장실 점검	
민간협회	· (구성) : 국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협회 · (역할) : 영화관·백화점·대형마트 등은 자체 점검, 외식업·숙박업은 지회·지부를 통해 점검, 소규모 마트 등은 경찰·지자체 합동점검 시 적극 협력	
시·도	· (불법촬영 담당 부서) 시·군·구 공중화장실 점검 지원 총괄 · (기타 부서) 산하기관 등 사업소 관리 소관 공중화장실 점검	*참고2
시·군·구	· (불법촬영 담당 부서) 불법촬영 점검 총괄 · (기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) 불법촬영 점검 지원	

### □ 세부 추진 체계



#### ① 행정안전부

- 시·도 불법촬영 담당 부서 및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로 점검 계획 수립 통보(매분기, 집중점검기간 등)
- \* 집중점검기간(설·추석 명절, 휴가철 등)에는 주요 공공기관(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공항공사 등)에 별도 협조요청

- 점검 실적취합(매분기)

#### ② 시·도 불법촬영 담당 부서

- 시·군·구 불법촬영 담당부서 및 소속 행정·산하기관에 점검계획 수립 통보  
예) ○○구, ○○교통공사 등

- 점검 및 실적취합·제출(매분기)

#### ③ 시·군·구 불법촬영 담당 부서(총괄) 및 소속 행정·산하기관

-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\*에 통보(공람)  
\* 예) 교통과(터미널 공중화장실, 신원복지(공원 공중화장실), 하천과(하천 공중화장실) 등
- \* 누락되는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없도록 주의('19.2.12. '믿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' 불가 단속, (세계일보), 불법촬영 공문 전달의 누락 사례 보도)

- 점검 및 실적취합·제출(매분기)

#### ④ 시·군·구 공중화장실 관리부서

-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·점검 및 소관 공중화장실 관련 기관, 단체에 통보
-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자(업체) 또는 관리인에게 불법촬영 점검 통보(교육안내)

#### IV. 점검절차(시·군·구 단위 기준)

##### □ 점검계획 수립

- (수입주기) 연 1회, 시·도, 시·군·구\*, 소속·산하 기관별 점검계획 수립
  - \*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·군·구에 포함하여 점검절차 부여
- (주요내용) 점검대상, 점검주기, 점검반 구성·운영, 민간소유 화장실 지원, 홍보계획 등 포함 ※ 분기별 점검실적 제출

##### □ 점검반 구성 및 운영

- 상시점검반
  - 자체인력(공공근로 등)을 활용하여 2인 1조로 구성, 매일 운영
  -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반 구성시 성별 고려
- 합동점검반
  - 지자체, 경찰, 공공기관,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
  - 집중점검기간(설·추석 명절, 휴가철 등)이나 지자체 필요시 운영
    - ※ (참고) 합동점검반 구성방식(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구성·운영)

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(예시)

시·군·구	경찰서	공공기관	민간
- 불법촬영 담당 부서 - 공중화장실 등 이중 이용시설 관리 부서 - 안전담당 부서 - 공중화장실 관리인	- 여성청소년과	- 시설 관리 부서 - 공중화장실 관리인	- 일자리 사업인력 - 여성 및 시민단체 - 자율방범대 - 자원봉사자, 서포터즈 - 민간 보안업체 등

- 지방경찰청과 MOU체결, 순찰 강화,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추진
- 아울러, 관련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휴가철 집중단속기간 운영
  - ※ 점검대상 및 주기 공유를 통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 확보

< 사례 >

- (경기 성남) 성남시는 경찰·대학교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, 상시점검 체계 유지(아시아타임즈, 2018.12.12.)
- (대구도시철도)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「불법촬영 안심도우미 사업」 실시(매일신문, 2019.1.30.)

##### □ 점검대상 및 주기

###### ○ 상시점검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장비점검(권장)
  - ※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특별·수시점검 대상 선정하여 상시점검

< 특별·수시 점검대상 선정기준 >

- 역·터미널,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화장실
-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
- 다중의 이용이 많은 1-2층 위주의 공중화장실 등

※ (일상점검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시·도, 시·군·구 및 법인 또는 개인은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매일 점검

###### ○ 합동점검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제점검
- 필요시 특별관리 대상, 민간소유 화장실 등 집중점검
- 집중점검기간(설·추석 명절·휴가철 등)에 1회 이상 점검

< 사례 >

- (경기 안양)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단속, 2인 1조 점검반 편성, 두 대의 전담차량 구입, 2019년 1월부터 성범죄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활동, 3월부터 경찰서, 시민단체, 자원봉사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 운영, 초·중·고등학교 화장실까지 대상 확대(경기도민일보, 2019.2.11.)
- (인천) 인천광역시, 인천 중구청, 인천지방경찰청, 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, 민간 봉사자(안전모니터봉사단, 폴리스 맘) 등 60여명이 참석화장실내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(동양뉴스통신, 2018.8.8.)

##### □ 점검방법

###### ○ 사전교육

-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(분기별, 필요시 수시)을 실시
-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점검 방법, 불법촬영 기기 사용법\* 등 교육
  - \* 지자체별 구비한 점검 장비별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교육 권장

###### ○ 점검 사전준비

- 입구에 안내표지판(점검중)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

##### ○ 점검방법

- 탐지장비(전파탐지기, 렌즈탐지기\*)를 활용해 점검
  - \* 전파탐지기 : 전파를 발사한 다음 그 전파가 목표물에 부딪쳐서 반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
  - \* 렌즈탐지기 :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, 소동하게 되어 그 빛을 이용하여 보이는 사물 중 빨간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하여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

< 집중점검 사항 >

-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주로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
-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,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
  - ※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,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, 보수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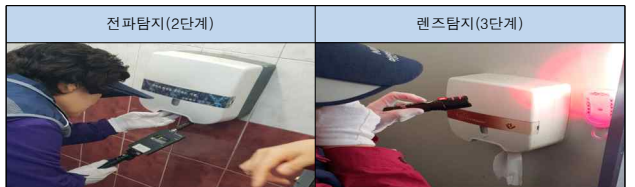
<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>



- (1단계) 육안을 통해 불법촬영 의심 물체, 정체불명의 흡입·구멍 등 점검



- (2단계)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
- (3단계) 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



##### □ 주요 탐지장비 현황

사 진			
특 징	• 서울시 여성안심 보안 관에 납품	• 경찰청, 한국철도공사 등에 납품	• 조달청 여성기업으로 등록

※ 개인 휴대형 렌즈탐지기(휴대폰 연결)는 3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음

## □ 점검결과 조치

### ○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

- **현장보존\*** 후 지체 없이 **경찰에 신고(☎112)**
  - \* 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

### ○ 의심흔적이 있는 경우

-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(의심흔적에 스티커 부착 등)
- 공중화장실 설치·관리자에게 의심흔적에 대해 보수 요청

### ○ 점검표 작성

- 점검 후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 기재



<점검표(예시)>

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		점검결과(이상유무)			
		점검일자 (19.4.8)	점검일자 (19.4.10)	점검일자 (19.4.15)	점검일자 (19.4.20)
육안점검 (매일)	의심흔적(흡집·구멍 등) 발견 여부	(O or X)			
	불법촬영 의심물체 발견 여부	X			
탐지 장비 점검(매주) 이상 유무		O			

※ 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

## V. 민간소유 화장실 점검지원

### □ 지원체계

#### ○ 행정안전부

- 5개 민간협회\*에 자체 점검 협조 요청, 지자체 점검 지원 안내
- \* 한국외식업중앙회, 대한숙박업중앙회, 한국백화점협회, 한국제인스토어협회, 한국상영권협회

#### ○ 시·도

- 시·군·구의 민간 소유 화장실 점검 필요사항 지원

#### ○ 시·군·구

-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 및 탐지장비 지원 요청 시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 협조

### □ 점검지원

- 점검 지원 안내 홍보(홈페이지, 관보 등)
- 소유주 및 관계자의 점검지원 요청 신청
- 점검반을 운영하여 점검 지원

#### < 사례 >

- (세종시)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세종경찰서, 세종YWCA, 성인권상담센터, 중촌종합복지센터 가정·성폭력 통합상담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영화관의 여성화장실을 집중점검, 시설관리자에게 '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'를 배부(대전투데이, 2019.1.23.)
- (인천 계양구)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반을 상시 운영, 구내 공중화장실 총187개소에 대해 탐지장비 활용해 점검, 민간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반을 통해 지원(신아일보, 2019.2.6.)

### □ 탐지장비 대여

- 탐지장비 대여 신청(온라인, 전화, 방문 등)
- 방문 수령 및 대여기간 안내(1주일 이내)
- 탐지장비 반납

#### < 사례 >

- (서울 강서구) '불법촬영 탐지장비' 대여 서비스 시작,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가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무료로 5일간 장비를 대여(헤럴드경제, 2019.3.21.)
- (충남 논산시)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·관리자·공공기관·민간인 등 관내 시민이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(전국매일신문, 2018.12.26.)

## VI. 홍보

### □ 홍보 체계

- 지자체별 언론보도, 홈페이지·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계획 수립
- 합동점검반 구성 기관·단체(지자체, 경찰서, 공공기관, 시민단체 등) 참여 캠페인 추진
- 민간소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참여 홍보
  - 상시점검 화장실 및 흡집·구멍 등 위험 요소가 없는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(소유주 희망시)
    - ※ 행정안전부 안심화장실 스티커 제작·배부
- "불법촬영은 범죄", "화장실 수시점검" 등의 홍보 스티커 배포
  - ※ 필요시 배너, 홍보 포스터 등 사용(점검표와 함께 사용 가능)



<범죄 예방 스티커(예시)>



※ 행안부 홈페이지(정책자료-참고자료 게시)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뉴스·소식-홍보자료-기타홍보자료 게시)에서 다운로드

## 참고 1 불법촬영 관련 규정

### 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

### 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(성폭력처벌법)

- (불법촬영)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·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  - ※ 당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, '18.12.18일자로 벌금 상향(1천만원 이하→3천만원 이하)
- (화장실 침입)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

**제12조(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)**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, 목욕장·목욕실 또는 발한실(發汗室), 모유수유시설,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*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**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·판매·임대·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·상영(이하 "반포등"이라 한다)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**제15조(미수범)**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**참고 2** 주요기관 연락처

□ 중앙부처·공공기관·민간협회 연락처

기 관	부 서	연 락 처
행정안전부	생활공간정책과	044) 205-3546
여성가족부	권익증진과	02) 2100-6392
경찰청	성폭력대책과	02) 3150-0910
국토교통부 (고속도로 휴게소 등)	도로투자지원과	044) 201-3883
교육부	기획담당관	044) 203-7111
한국도로공사	영업본부	054) 811-2334
한국철도공사	여객사업본부	042) 615-3999
한국공항공사	운영본부	02) 2660-2443
한국외식업중앙회	-	02) 6191-2900
대한속박업중앙회	-	02) 2631-9868
한국백화점협회	-	02) 754-6054
한국체인스토어협회	-	02) 522-1271
한국상영관협회	-	02) 735-3668

□ 시도 불법촬영 및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 연락처

기 관	부 서	연 락 처	비 고
서울특별시	여성정책담당관	02) 2133-5025	
	질병관리과	02) 2133-7670	
부산광역시	생활수질개선과	051) 888-3765	
대구광역시	여성가족정책과	053) 803-3531	
	수질개선과	053) 803-4285	
인천광역시	여성정책과	032) 440-2758	
	수질환경과	032) 440-3634	
광주광역시	생태수질과	062) 613-4273	
대전광역시	안전정책과	042) 270-4932	
	맑은물정책과	042) 270-5511	
울산광역시	환경보전과	052) 229-3192	
세종특별자치시	여성가족과	044) 300-3715	
	환경정책과	044) 300-4262	
경기도	여성정책과	031) 8008-4381	
	수질총량과	031) 8008-6993	
강원도	수질보전과	033) 249-2592	
충청북도	여성정책관	043) 220-3924	
	환경정책과	043) 220-4034	
충청남도	물관리정책과	041) 635-4475	
전라북도	물환경관리과	063) 280-3557	
전라남도	물환경과	061) 286-7142	
경상북도	여성가족정책관	054) 880-4540	
	물산업과	054) 880-3583	
경상남도	수질관리과	055) 211-6716	
제주특별자치도	여성가족청소년과	064) 710-2865	
	생활환경과	064) 710-6082	

□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

기 관	연 락 처
여성긴급전화 www.women1366.kr	연락처 1366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지원내용 전문상담소, 각 지역 경찰, 병원, 법률 기관 등 연계
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ww.women1366.kr/stopds	상담연락처 02-735-8994 상담시간 평일 10:00 ~ 17:00 지원내용 상담, 삭제 지원, 수사 지원 등
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www.cyber-lion.com	상담연락처 02-817-7959 / hotline@cyber-lion.com 상담시간 평일 13:00 ~ 17:00 지원내용 상담, 삭제지원, 수사지원, 법률 지원,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
한국성폭력 상담소 www.sisters.or.kr	상담연락처 02-388-5801 상담시간 평일 10:00 ~ 17:00 지원내용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, 의료적, 법률적 지원
한국여성의 전화 www.hotline.or.kr	상담연락처 02-2263-6464,5 상담시간 평일 10:00 ~ 17:00 지원내용 전화상담, 면접상담, 이메일 상담, 무료 법률 상담
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http://womenlink.or.kr	상담연락처 02-335-1858 상담시간 평일 10:00 ~ 17:00 지원내용 심리적 지원, 법적 지원, 의료적 지원, 기타 지원

소관 부서

<b>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</b>	
연락처	(044) 205-3546
※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,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	